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7가단522612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김태원, 김교문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주식회사 D

변론 종결2018. 3. 7.(피고 1, 2, 3에 대하여)

2019. 1. 9.(피고 4.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9. 2.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989,132원 및 그 중 151,287,523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주문 제1항

-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 사이의 2016. 11.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A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11. 23. 접수 제868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 목록 기재 18, 19.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의 2016. 11.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11. 23. 접수 제868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182,7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20.(이후 보증원금은 149,04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7. 12. 15.로 각 변경됨)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12. 20. (주)E으로부터
20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 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5. 6. 1. 이후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 1) 피고 A는 2016. 11. 2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11. 23. 접수 제8686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2) 피고 B은 2016. 11. 23.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8, 19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11. 23. 접수 제8686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A에 대하여 2017. 6. 7. 기타 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11. 23. (주)E에 151,287,523원(원금 149,040,000원 + 이자 2,247,5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8,701,609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A, B,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A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59,989,132원(대위변제금 151,287,523원 + 법적절차비용 8,701,60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51,287,523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12. 14.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A, B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지 약 7개월 정도 지난 2017. 6. 7.경 피고 A에 기타 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 B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7. 11. 23. 원고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나) 갑 12, 13, 14, 20, 21호증, 을라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11. 23.과 가까운 2016. 12. 31. 기준 피고 A의 재산 상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적극재산

(가) 합계 13,668,991,079원[2016. 12. 31.자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 중 무형자산(특허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합계액 1,191,794,731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피고 B에 대한 단기대여금 41,971,000원은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외]

① 유동자산 합계 7,324,009,699원

㉠ 당좌자산(현금, 매출채권, 미수금, 단기대여금 등): 4,575,980,731원

㉡ 재고자산(상품, 원재료 등): 2,748,028,968원

② 비유동자산 합계: 6,344,981,380원

㉢ 투자자산(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등): 956,356,589원

㉣ 유형자산(부동산, 기계장치 등): 5,858,222,791원

㉤ 기타 비유동자산(임차보증금 등): 230,402,000원

㉥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갑 13,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F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7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7억 원을 비유동자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의 2016. 12. 31.자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기재된 것들 중 부동산, 기계장치 등 유형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702,139,035원 상당의 매출채권, 3,941,478원 상당의 미수금채권, 6,021,340원 상당의 미수수익채권, 1,263,432,735원 상당의 선급금 채권, 15,818,396원 상당의 선급비용채권, 820,558,969원 상당의 단기대여금채권, 2,748,028,968원

상당의 재고자산 등은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갑 12, 20호증, 을라 1,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 A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16.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에 의해 수량이 파악되고 정기적인 실지 재고조사에 의해 확정된 것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그 가액은 평가손실 및 감모손실을 차감하여 산정하였고 제품평가충당금, 원재료평가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두었고,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며, 매출채권, 선급금, 단기대여금 등에 대해서도 회수가능성 및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예상한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고, 달리 위 각 항목을 과대계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 피고 A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았고, 외부감사인인 H회계법인은 2017. 1. 2. 피고 A의 창고와 사무실에서 재고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실사를 거쳐 "피고 A의 위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 피고 A의 2016년도 월별 외상매출액은 약 11억 1,000만 원 ~ 약 15억 9,000만 원이고 매출채권 회수액은 매월 약 10억 2,000만 원 ~ 약 15억 9,000만 원인 점, 외상매출 잔액이 2016. 1. 1. 기준 약 28억 원에서 2016. 12. 31. 기준 약 24억 원으로 줄어든 점에 비추어 피고 A의 매출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재무제표상 자산이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극재산

(가) 합계: 13,051,179,000원

① 매입채무: 2,107,145,019원

② 미지급금: 728,952,068원

③ 예수금: 7,505,974원

- ④ 선수금: 261,736,216원
- ⑤ 단기차입금: 3,584,499,000원
- ㉡ I은행: 29,900,000원
- ㉢ J은행: 340,534,000원
- ㉣ K은행: 449,924,000원(350,000,000원 + 99,924,000원)
- ㉤ 기업은행: 1,484,000,000원(300,000,000원 + 770,000,000원 + 414,000,000원)
- ㉥ E은행: 265,600,000원(165,600,000원 + 100,000,000원)
- ㉦ 산업은행: 500,000,000원
- ㉧ 주식회사 L: 450,000,000원
- ㉨ M: 8,400,000원
- ㉩ N: 56,141,000원
- ⑥ 미지급비용: 314,376,216원
- ⑦ 유동성장기부채: 841,600,000원
- ⑧ 유동성 사채(사모사채): 1,000,000,000원
- ⑨ 장기차입금: 3,895,065,000원 [1년 이내 만기도래분 841,600,000원은 단기차입금에 계상되어 차감]
- ㉡ 기업은행: 1,128,945,000원(200,000,000원 + 500,000,000원 + 374,995,000원 + 53,950,000원)
- ㉢ 중소기업진흥공단 137,500,000원
- ㉣ E은행 65,600,000원
- ㉤ K은행 3,168,700,000원(558,300,000원 + 1,600,400,000원 + 800,000,000원 + 210,000,000원)
- ㉥ N 13,920,000원
- ㉦ O은행 222,000,000원
- ⑩ 퇴직급여충당부채 310,299,508원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피고 A가 앞서 본 채무 외에 다음과 같은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원고에 대한 175,685,587원 상당의 구상금채무

㉡ 신용카드대금채무

P 37,998,000원, Q은행 14,680,000원, R카드 16,800,000원, S카드 16,995,000원, T카드 18,200,000원, U카드 17,400,000원, V카드 13,100,000원, W카드 4,000,0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무

X(주) 253,746,959원

Y(주) 76,398,856원

신용보증기금 경기광주지점 1,075,340,000원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203,064,305원

중소기업진흥공단 75,832,115원

Z(주) 375,544,312원

(주)R 19,742,393원

기술보증기금 654,500,000원

한국무역보험공사 300,000,000원

AA(유) 90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원

㉣ (주)K 3,653,290,800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

㉤ (주)AB 450,000,000원

㉥ 피고 D 585,252,587원

② 그러나 갑 12, 13, 20, 21호증, 을라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6. 11. 23.경 피고 A가 앞서 본 채무들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무들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㉓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E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는 K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는 기업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채무는 기업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각 신용보증과 관련한 것으로서 위 각 대출금채무는 앞서 본 장·단기대출금 채무에 모두 반영되어 있어 이와 별도로 소극적 재산에 추가할 것은 아니다.

㉔ 원고가 주장하는 각 신용카드채무 중 S카드, U카드, V카드에 대한 채무는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R카드, T카드, W카드에 대한 채무는 그 연체시기가 모두 2017. 8. 이후이고, 그 발생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연체시기로부터 9개월 정도 이전인 2016. 11. 당시 피고 A가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㉕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무들은 그 가압류 시기가 2017. 7. 이후로서 채무의 발생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

㉖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K은행, AB, 피고 D 등에 대한 채무는 앞서 본 피고 A의 장·단기차입금채무 또는 매입채무에 포함되어 있다.

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에서 본 피고 A의 재산상태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13,668,991,079원)이

소극재산(13,051,178,711원)을 초과하고 있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A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최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나) 갑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11. 23. 당시 적극재산으로 392,92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18, 19 부동산과 990,000,000원 상당의 성남시 분당구 AC아파트 AD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K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0,000원, AE에 대한 대출금채무 32,655,000원, T카드에 대한 대출금채무 11,648,000원, O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655,00,000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합계 5,799,154,000원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D는 2010년경부터 피고 A에 기능성 필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인 PET, OPP 필름 등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 D는 피고 A에 2016. 1.부터 2016. 6.까지는 월 매출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2016. 7.부터 공급 규모가 늘어나 2016. 10. 월 매출액이 2억 6,000만 원까지 이르렀다. 이에 피고 D는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이후 2017. 1. 월 매출액이 약 6억 8,000만 원, 2017. 4. 매출액이 약 6억 2,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피고 A에 대한 물품공급을 대규모로 늘려 결국 2017. 5. 31. 물품대금채권 잔액이 1,308,336,800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이미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D로부터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A의 공장 및 그 부지로서 그 필지만 여러 개로 나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공장부지 전체 면적 7,380m² 중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의 별지 18, 19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었기 때문에, 피고 D는 피고 A에 대한 거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와 그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사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자가 피고 B인 별지 18, 19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따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그 채무의 대부분은 피고 A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가 실질적 당사자로 여긴 피고 A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수영

별지